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9
----------	-----

제출년월일 : 2016. 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범위에 일치되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의 단서조문 삭제

‘단,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12. 30. ~ 2016. 1. 19.)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법제심사 : 원안동의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 조에 따른 개인택시·용달화물 자동차·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 제한다. <u>단,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 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은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 ----- ----- ----- -----. <단서 삭제></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연락처	(033) 330 - 2470

관계법령 발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5.11.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 (최 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 형	36㎡ ~ 40㎡
2) 중 형	23㎡ ~ 26㎡
3) 소 형	15㎡ ~ 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13㎡ ~ 15㎡
2) 개인택시	10㎡ ~ 13㎡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29.]

[별표 1] <개정 2015.5.2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